

2022학년도 2학기

대학원생(박사과정) 장기해외연수 지원 계획

□ 목적

- 대학원생(박사과정)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,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

□ 지원자격

- 박사과정 재학생, 수료자(연구생등록자)

★ 이중수혜금지

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,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,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

※ 2022학년도 2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

□ 연수기간

- 2022년 9월 ~ 12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

□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

- 선정예정인원: ○명
- 연수금 지원기간: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

□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

- 선발절차
 - 1차 심사: 서류심사
 - 2차 심사: 선정위원회에 의한 면접 (연수국 언어능력 포함)
- 선발방법: 1차 심사 + 2차 심사 점수 합산
- 선발위원회 구성
 - 위원장: 국제협력본부장
 - 위 원: 추후 위촉

□ 연수비 지원

○ 권역별 지원 금액(안)

(단위: 원)

권역별	항공료	체재비	연수비	계
아시아	1,000,000	4,200,000	3,000,000	8,200,000
중동 / 아프리카	1,500,000	4,200,000	3,000,000	8,700,000
미주 / 유럽 / 오세아니아	1,500,000	6,000,000	5,000,000	12,500,000

□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일정

- 지원서류 제출: 2022.7.18.(월)~7.27.(수)까지 <지원자 → 소속 단과대학(원) 행정실>
- 지원서류 취합 및 제출: 2022.8.1.(월)까지 <각 단과대학(원) → 국제협력본부>
- 면접대상자 발표: 2022.8.5.(금) (예정) <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>
- 면접 일정: 추후 공지

○ 서류제출 장소: 소속대학(원) 행정실

○ 제출서류

1.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(서식1)
2. 연수계획서 (서식2)
3.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(자유형식)
4. 서약서 (서식3)
5. 이력서 (자유형식)
6.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
7. 연수기관 (대학)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
8.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(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)
 - 영어: TOEFL IBT 80, IELTS 5.5, TOEIC 800, TEPS 640
 - 파견국가 언어: 유럽 언어 공통 기준(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) B2 이상
- ※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
- ※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
(단,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9. 부모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)
10. 부모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)

※ 제출서류 9,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
확인 후 제출

□ 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

○ 연수방법

-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
- 연수기간동안 full-time 현지체류
- 강의 및 연구 참여
-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

○ 보고서 제출

- 착수보고서: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
- 중간보고서: 연수국 도착일 부터 3개월 이내
- 결과보고서: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

□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

- 지급방법: 2차에 걸쳐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
1차 지원금: 항공료 및 체재비
2차 지원금: 연수비
- 지급절차
1차 지원금: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
2차 지원금: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
(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)

□ 유의사항

-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
-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
- 한국에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신고하여야 함
-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,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

□ 연수지원금 회수

-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- 이중수혜자
-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-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-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